

# 경찰헌법도약 동형모의고사

## [26년1차대비] 초판(26년최신판)

### 정오표

(2026년 02월 04일 기준)

※ 본 정오표는 2026년 02월 02일 발행된 “경찰헌법도약 동형모의고사 [26년1차대비]” 초판(26년최신판)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헌법도약 동형모의고사 [26년1차대비] 초판(26년최신판) - 정오표**

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2026년 02월 04일 기준)

“경찰헌법도약 동형모의고사 [26년1차대비] 초판(26년최신판) 1쇄(판권, 2026년 02월 02일 발행)”에서 수정사항 또는 추가(보완) 내용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p><b>[문제편]</b></p> <p><b>p. 4</b> (제1회) 문 01. 지문 ④</p>	<p>④ 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에서는 ~</p>	<p>④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는 ~</p>
<p><b>p. 51</b> (제5회) 문 20. 지문 ①</p>	<p>(지문 ① 선택지 누락)</p>	<p>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의 표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p> <p><b>(정오표 맨 마지막에 &lt;붙임&gt; 참조)</b></p>
<p><b>p. 59</b> (제6회) 문 12. 지문 ③ 네번제출</p>	<p>~ 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채권자'의 <u>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u></p>	<p>~ 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채권자'의 <u>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u></p>
<p><b>p. 67</b> (제7회) 문 08. 선택항 ①②③④</p>	<p>(선택항 ①②③④ 누락)</p>	<p>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p> <p><b>(정오표 맨 마지막에 &lt;붙임&gt; 참조)</b></p>
<p><b>p. 79</b> (제8회) 문 12. 지문 ② 두번제출</p>	<p>~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u>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u></p>	<p>~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u>가리키는 것일 뿐이다.</u></p>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b>[해설면]</b> <b>p. 2</b> <제1회> 문 01. 지문 ④	④ 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에서는 ~	④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는 ~
<b>p. 26</b> <제2회> 문 16. ㉞ 해설내용 맨마지막	~ 기출문제집 문20의 ㉞번 지문	~ 기출문제집 AS교재 문20의 ㉞번 지문
<b>p. 31</b> <제3회> 문 03. 지문 ① 해설내용 맨마지막	목 O 수 O 해 X 법 X	목 O 수 X 해 X 법 X
<b>p. 81</b> <제6회> 문 12. 지문 ③ (문제부분)	~ 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어떠한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 조항은 '전통사찰의 일반채권자'의 <b>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b>
<b>p. 109</b> <제8회> 문 12. 지문 ② (문제부분)	~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b>뿐이다.</b>

※ 정오표 <끝>

다음 페이지부터는 <붙임> 입니다. 오류가 발생한 문제편 해당페이지를 수정하여 전체페이지를 그대로 다시 실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20

甲은 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당 소속으로 Z구의 구청장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甲은 '같은 선거에 출마하는 경쟁자인 乙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乙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①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의 표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입법목적 달성을 데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 ③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사생활에 대한 비방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상대방 후보자 측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음으로써 비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이미 과도한 비방으로 인해 혼탁한 선거과정이 더욱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